

**A Petition to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from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미국 국민들이 미국 연방 대 법원에 보내는 청원서**

To the Honorable Justices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존경하는 미국 대 법원 판사분들께: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humbly petition you to redress and correct the grave injustice and the crime against humanity which is being perpetuated by your decisions in *Roe v. Wade*, *Doe v. Bolton*, and *Planned Parenthood v. Casey* (the abortion cases).

우리 미국 국민들은, 로우 대 웨이드 판결, 도우 대 볼튼 판결, 그리고 미국 가족 계획 연맹 대 케이시 판결 (낙태에 관한 판례들) 에 관한 결정에 의해 영속되는 심각한 불의와 인류에 대한 범죄를 바로 잡아주시길 정중히 청원합니다.

WHEREAS: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ommitted a grave injustice and a crime against humanity in the *Dred Scott* (slavery) decision by denying personhood to a class of human beings, African Americans; and

전문: 미국 대법원은 드레드 스카트 (노예 제도) 판결로 인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인격적인 인간성을 거부함으로써 심각한 불의와 비인도적인 범죄를 행했고

WHEREAS: The Supreme Court committed a grave injustice and a crime against humanity by upholding the “*separate but equal*” doctrine in *Plessy v. Ferguson* which withdrew legal protection from a class of human beings who were persons under the Constitution, African Americans; and

전문: 대법원은 미국 헌법 아래 인간으로서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 중에 특정 집단, 즉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서만 그 법적 보호를 철회했던 *플레시 대 퍼거슨 판결*에서 “*개별적이지만 평등한*” 원칙을 지지함으로써 심각한 불의와 비인도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WHEREAS: A crime against humanity occurs when a government withdraws legal protection from a class of human beings resulting in severe deprivation of their rights, up to and including death; and

전문: 인류에 대한 범죄는, 정부가 한 특정 계급의 사람들에게 한해서 법적 보호를 철회할때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 그들의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한 권리 박탈이 일어나게 됩니다.

WHEREAS: In *Brown v. Board of Education*, the Supreme Court corrected its own grave injustice and crime against humanity created in *Plessy v. Ferguson* by reversing and abolishing the 58 year old “separate but equal” doctrine, thus giving equal legal rights to African Americans; and

전문: 브라운 대 교육 위원회 판결에서, 대법원은 58 년된 “개별적이지만 평등한” 원칙을 뒤집고 폐지함으로써 플레시 대 퍼거슨 판결에서 발생한 심각한 불의와 인류에 대한 범죄를 바로 잡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도 동등한 법적 권리를 부여했고

WHEREAS: Under the doctrine of *stare decisis* the three abortion cases mentioned above meet the test for when a case should be overturned by the Supreme Court because of significant changes in facts or law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전문: 선례 구속의 원칙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낙태에 관한 판례들은 사실 혹은 법의 중요한 변화로 인해 대법원이 지난 판결을 뒤집어야 할 때 인가의 검사를 충족합니다. 다음 내용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a) The cases have not been accepted by scholars, judges and the American people, as witnessed to by the fact that these cases are still the most intensely controversial cases in American history and at the present time.
이 판례들이 미국의 지난 역사와 현재에서도 여전히 가장 심각한 논쟁을 일으킨다는것은, 학자들, 판사들 그리고 미국 국민들에 의해 이 판결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 b) New scientific advances have demonstrated since 1973 that life begins at the moment of conception and the child in a woman's womb is a human being. 1973 년 부터 새로운 과학적 발전은 생명이 수정이 되는 순간에 시작되고 여성의 자궁에 있는 아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 c) Scientific evidence and personal testimonies document the massive harm that

abortion causes to women (see www.operationoutcry.org and www.afterabortion.org).

과학적 증거와 개인적인 증언은 낙태가 여성에게 미치는 막대한 피해를 문서화한다 (www.operationoutcry.org 및 www.afterabortion.org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d) The laws in all 50 states have now changed through Safe Haven laws to eliminate all burden of child care from women who do not want to care for a child. See nationalsafehavenalliance.org

아동을 돌보고 싶어 하지 않는 여성들의 보육 부담을 모두 없애기 위해 세이프 헤이븐 법률을 통해 50 개 모든 주의 법률이 변경되었다.

nationalsafehavenalliance.org 웹사이트 참조.

- e) Public attitudes favoring adoption have created a culture of adoption in the United States with many families waiting long periods of time to adopt newborn infants.

입양을 선호하는 대중의 태도가 미국의 입양 문화를 형성했고, 신생아를 입양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많은 가족들이 있다.

BE IT RESOLVED: We urgently plead with you and pray to the Lord Jesus Christ for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to do the right thing, as you did in one of your greatest cases, *Brown v. Board of Education*, which overturned a 58 year old prece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reverse, cancel, overturn and annul *Roe v. Wade*, *Doe v. Bolton*, and *Planned Parenthood v. Casey*.

해결 요청: 미국 대 법원이 내린 아주 훌륭한 판결 중의 하나인 *브라운 대 교육 위원회 판례*가 58년 된 미국 대 법원의 판결 전례를 뒤집음으로 정의를 행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로우 대 웨이드 판례*, *도우 대 볼튼 판례*, 그리고 *미국 가족 계획 연맹 대 케이스 판례*를 뒤집고 취소하며 무효화 하여 미국 대 법원이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간곡히 간청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에 의해 양도 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 받았다는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여깁니다...”

Agreed to and signed by the following persons:

다음 분이 동의하고 서명합니다:

Name 이름

***An Explanation of the Petition to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From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미국 국민들이 미국 대법원에 보내는 청원서에 대한 설명

The purpose of the petition to the Supreme Court is to provide an outlet for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to show their Supreme Court they do not accept the decisions in *Roe v. Wade*, *Doe v. Bolton* and *Planned Parenthood v. Casey*. This petition will demonstrate that over a million Americans know that abortion is a crime against humanity and can never be accepted by a just society.

대법원에 청원하는 목적은 미국 국민들이 로우 대 웨이드 사건, 도우 대 볼튼 사건, 그리고 미국 가족 계획 연맹 대 케이시 판결에 대한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대법원에 보여주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이 청원서는 백 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낙태가 인류에 대한 범죄인것을 알며, 정당한 사회에서는 받아들여 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줄것 입니다.

In 1992, in *Planned Parenthood v. Casey*, the Supreme Court did not overrule *Roe* and *Doe* because the Court stated that Americans had come to rely upon the cases and the Supreme Court was going to settle the abortion controversy for all time. Obviously, the Supreme Court failed to settle the controversy. **Abortion is still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in American society today.** This petition will give each American a mechanism to petition their government for redress of grievances.

1992년 대법원은 *미국 가족 계획 연맹 대 케이시 판결* 때 로우와 도우 판례를 뒤집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미국 시민들이 낙태 합법 판결에 이미 의존해 온 상태이고, 자꾸 일어나는 이 논쟁을 마침내 해결하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이 논쟁을 해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낙태는 현재에도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크게 논쟁되어지는 이슈입니다. 이 청원은 각 미국인들에게 그들의 불만을 바로 잡도록 탄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There are significant reasons why the Supreme Court should do the right thing as the Supreme Court did in *Brown v. Board of Education* and reverse the crime against humanity it created in *Roe and Doe. Planned Parenthood v. Casey*, which weakened but did not reverse *Roe and Doe*, has been called the worst constitutional decision of all time because it placed the reputation of the Supreme Court above the lives of innocent children. Michael S. Paulsen, *The Worst Constitutional Decision of All Time*, 78 Notre Dame L. Rev. 995 (2003). Available at: <http://scholarship.law.nd.edu/ndlr/vol78/iss4/2>

대법원이 *브라운 대 교육 위원회 판결*에서 옳은 일을 한 것처럼, *로우와 도우 판결*에서 만들어진 반인류적인 범죄를 철회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화시키긴 했지만 *로우와 도우 판례*를 완전 뒤집지는 못한 *미국 가족 계획 연맹 대 케이시 판결*은 무고한 아이들의 생명보다 대법원의 명성을 더 중요시 여겼기에 모든 면에서 최악의 헌법적 결정으로 불려왔습니다. 마이클 에스 폴슨, 최악의 헌법적 결정, 78 노트르담 엘 목사 995 (2003). <http://scholarship.law.nd.edu/ndlr/vol78/iss4/2> 을 참조하십시오.

The petition correctly identifies abortion as a crime against humanity. It also educates Americans to the fact that there is another mechanism that women can "rely upon" for birth control rather than abortion through the Safe Haven laws which are now available in all 50 states. She can transfer responsibility for the child to the state by simply dropping the child off at a state approved location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birth. See www.nationalsafehaven.org. This is a "change in the law" since 1992, the last time the Court evaluated *Roe and Doe*. Safe Haven laws were not present in 1992. The Supreme Court is justified in overturning precedent when facts, circumstances and law have changed that make the original decision no longer just, even if it ever was, which *Roe and Doe* were not.

청원서는 낙태를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정확하게 밝힙니다. 또한 미국 국민들에게 50 개 모든 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이프 헤이븐 법률을 통해 여성들이 낙태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교육합니다. 여성은 출생 후 합리적인 시간 안에 주 정부가 승인 한 장소에 아이들을 맡김으로 자녀에 대한 책임을 주 정부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www.nationalsafehaven.org 을 참조하십시오. 이것은 법원이 *로우와 도우 판결*을 마지막으로

평가했던 1992 년 이래 발생한 “법의 변화”입니다. 세이프 헤이븐 법률은 1992 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래의 판결이 그때 당시에는 정의로웠더라도, 로우와 도우 판례처럼 원래 결정이 더 이상 정당하지 않도록 사실, 상황 및 법이 바뀌었을 때 원래의 판결을 번복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Plessy v. Ferguson which made the separate but equal doctrine the "law of the land," was a 58 yr. old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This decision was a crime against humanity just as *Dred Scott* (slavery) was a crime against humanity by withdrawing legal protection from African-Americans. All Americans can and should join this petition to the Supreme Court created by The Justice Foundation for you and others. It is a right of citizens to petition their government for redress of grievances.

개별적이지만 평등함을 이 땅의 거스를수 없는 법 으로 규정한 *페시 대 퍼거슨* 판결은 58 년 된 대법원의 오래된 판례였습니다. 이 결정은 드레드 스카트 (노예 제도)가 아프리카 계 미국인의 법적 보호를 철회하는 반인륜적인 범죄였던 것처럼 반인륜적인 범죄였습니다. 모든 미국 국민들은 귀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Justice Foundation 이 대법원에 제출하는 이 청원서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불만을 정부에 청원하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입니다.

Why petition the Court? This is an unusual step, but ending a crime against humanity justifies unusual action.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did not vote for *Roe v. Wade*, instead the Supreme Court created the crime against humanity which is *Roe, Doe and Planned Parenthood v. Casey*. It is the Supreme Court which must be petitioned by the people to change its decision. It is also right and just to give the Court the opportunity to correct their own error.

왜 법원에 청원해야 할까요? 이것은 특이한 조치이지만, 반인륜적인 범죄를 끝낼수 있다면 특이한 방법이라도 동원해야 합니다. 미국 국민은 *로우 대 웨이드 판결*에 투표하지 않았고 대법원이 *로우 판결, 도우 판결 그리고 미국 가족 계획 연맹 대 케이시 판결*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결정을 바꾸기 위해 사람들이 대법원에 청원해야만 합니다. 또한 법원에 자신의 잘못을 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옳고 정당합니다.

Judges have petitioned the Court to re-evaluate these cases which the Supreme Court has refused to do. See *McCorvey v. Hill*, 385 F. 3d 846 (5th Cir. 2004). Recently, the 8th Circuit Court of Appeals in a unanimous decision urged the Supreme Court to reverse its decision in these cases. See North Dakota case: *Wayne Stenehjem, et al v. MKB Management Corp., et al*, 795 F.3d 768 (2015).

판사들은 대 법원이 이 판례들을 재 평가하기를 청원했는데 대 법원이 거부 하고 있습니다. 맥코이브 대 힐 판결 385 F. 3d 846 (5th Cir. 2004) 을 참조하십시오. 최근에 제 8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이 만장 일치로 결정하여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뒤집도록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노쓰 다코다 사건: *Wayne Stenehjem, et al v. MKB Management Corp., et al*, 795 F.3d 768 (2015) 을 참조하십시오.

While this petition alone cannot mandate the reversal of *Roe v. Wade*, *Doe v. Bolton* and *Planned Parenthood v. Casey* by itself, it can encourage the Supreme Court to exercise its under the *Writ of Certiorari* to accept a case in which it could evaluate the facts and law in a fair and impartial manner and reach a conclusion that achieves justice by reversing its crimes against humanity.

이 청원서만으로 로우 대 웨이드 판결, 도우 대 볼튼대 판결, 그리고 미국 가족 계획 연맹 대 케이시 판결 자체를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이 이송 명령 영장을 따라 결정권을 행사하여 사실과 법을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박함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결론에 도달 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는 있습니다.

Injustice must be confronted with perseverance and courage. Join us! Share this Petition!

불의는 인내와 용기로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청원서를 공유해주십시오!